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01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 김성주·허종식·이학영

이용빈 · 최종윤 · 민형배

황운하 • 양정숙 • 김민석

박상혁 • 고민정 • 김원이

정춘숙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상담·전문 상담,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확대에 한계 봉 착하여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 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각각에 맞는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또한, 지자체장은 지정된 광역·지역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지역센터 평가 외에도 광역센터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9조, 제20조).

법률 제 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준비"를 "생애주기 노후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조제5호부터 제8호까 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 중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 성
-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 • 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노후준비지원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정보유출의 금지)"를 "(정보보호)"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광역 및 지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청장 (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7항"을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또는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센터의"를 "광역센터 또는지역센터의"로, "지역센터로"를 "광역센터 또는지역센터의"로, "지역센터로"를 "광역센터 또는지역센터의"로, "지역센터로"를 "광역센터 또는지역센터로"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_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준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신 설>

5. ~ 8. (생략)

- (생 략)
 - ②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포함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 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 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생애주기 노후

- 1. ~ 3. (현행과 같음)
- 지정
-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 노후준비<u>지원센터</u> -----

사항

- 6. (생략)
-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 (생략)
- 2. 관계 <u>행정기관</u>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신 설>

<u>3</u>. · <u>4</u>. (생 략)

④ (생 략)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생」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 영한다.

6.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중앙행정기관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
<u>4</u> .· <u>5</u>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 1. ~ 4. (생 략)
-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5.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① 시·도지사는 국민의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 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 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 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 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 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 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 정기준 • 절차, 평가방법, 폐지 ·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 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 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 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

 준비 인식 제고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군· 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지역센터의 장이 지역센터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

- 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 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
 준비 인식 제고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후 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미 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 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신 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중앙센 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삭 제>

③·④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수행 평 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 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 센터 -----

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저 구축·운영) ① (생 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u>성실히 이에 응하</u> 여야 한다.
-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신 설>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H 의 기 이 기 시 A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중앙센터, 광역센터
② 시·도지사(광역 및 지역센
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

- ② <u>제1항</u>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9조(시정명령) <u>보건복지부장관</u> 제19조(시정명령) <u>시·도지사(광</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u>제18조제1항</u>에 따른 보고 또 2. <u>제18조제2항</u>-----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3. (생략)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3</u>	제1	항 및	! 제:	<u> 2항</u>	 	

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 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 • 군・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 다)은 광역센터 또는 ---------.

-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 |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 제4항-----

 - 3. (현행과 같음)
-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시·도 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는 시·군·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 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10조제5항</u>에서 정한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 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 한 경우
- 4. (생략)
- ② <u>보건복지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u>지역센터</u>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u>지역센터의</u>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u>지역센</u> 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7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10조의2제1항</u>	-
	-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u>_</u>
<u>청장</u>	-
<u>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u>	_
<u>.</u>	
③ (현행과 같음)	
④ <u>광역센터 또는</u>	<u>-</u>
지역센터의	-
<u>광역선</u>]
<u>터 또는 지역센터로</u>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u>중앙노</u>	
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	
지원센터	-
	-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